

제 268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2023.1.18.)

**일 반 의 안**  
**심 사 보 고 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 목 차

1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	1
---	--------------------------------	---



#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3. 1. 18.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 2.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 12.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에게 군세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 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2) 감면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3) 감면내역

- 2023 주민세 면제 : 개인분, 사업소분(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2023 자동차세 면제 : 소유분
- 2023 재산세 면제 :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 4)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본 의결에 따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함.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2022년 10월 30일 선포하였음.
-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우리군에 거주 중인 유가족은 없으나 유가족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1부.

2. 행정안전부 시행“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 통보”  
공문서(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022.11.2.) 1부.

3. 행정안전부 시행“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  
기준 알림”공문서(지방세정책과-4561호, 2022.11.7.) 1부.

#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거창군수가 제출한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1.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 2. 감면내역

- 2023 주민세 면제 : 개인분, 사업소분(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2023 자동차세 면제 : 소유분
- 2023 재산세 면제 :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 3.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본 의결에 따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  
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  
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  
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  
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  
다)하는 지방세 감면
  -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

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 통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022.11.2.]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1. 지방세정책과-4442(2022.11.1.)호와 관련됩니다.
2.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고 계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하여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감면대상자 자료구축 등 지방세 감면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정과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부산광역시(세정운영담당관), 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지방세정책담당관), 남세협력담당관, 광주광역시(세정과장), 대전광역시(세정과장),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조세정의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담당관),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차세대세정기획부장)

주무관 공저훈 지방세특례제 전결 2022. 11. 2.  
도과장 권순태

협조자

시행 지방세특례제도과-2488 (2022. 11. 2.) 접수 세정과-21147 (2022. 11. 3.)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여진동, 행정안전부 별 / http://www.mois.go.kr  
관) 619호

전화번호 044-206-3853 팩스번호 044-204-8971 / kongsin@korea.kr / 비공개

---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

2022. 11.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쏘지 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1 추진 배경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10.30.)
-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 2 지방세 감면 추진

#### 1 지원 방식

- 쏘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 2 감면 대상자 (이하 “유가족”)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3 감면 내용

- '22. 12.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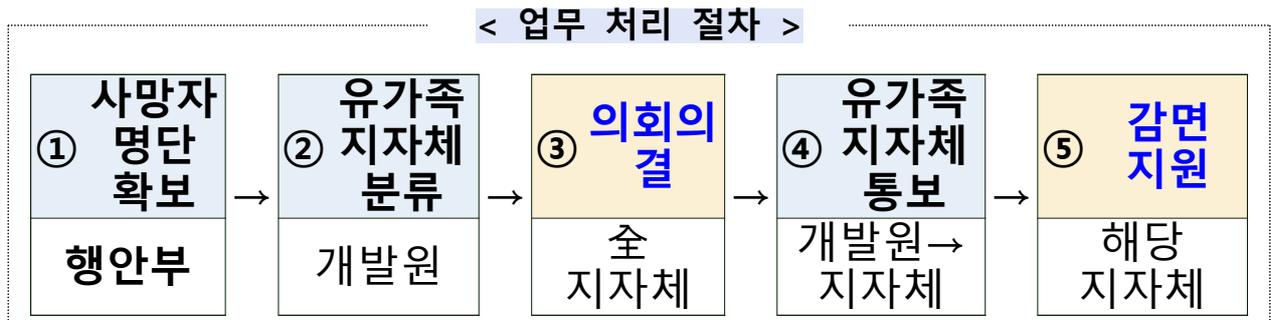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민세 개인분*	•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동차세 소유분	•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산세	•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② 지역자원시설세	• 사망자 가족 (소방분)	특·광역시, 도		
③	취득세	•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3 협조사항



○ (개발원) 사망자 내역을 토대로 가족관계 전산 연계, 감면대상자 (유가족)의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대상자 내역 통보

\* (정기분) 세목별 과세기준일 현재 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취득세)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

○ (지자체) '22. 2기분 자동차세부터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22년 11월 중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完, '23년까지 감면 조치

※ 지방의회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자동차세(12월)에 대한 고지유예 등을 실시하여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先조치 필요

- ✓ 각 지자체에서는 본 감면 의결안 활용시, 관할 세목만 기재
-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可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표준안)

○○도지사(시장)가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도(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1.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2. 세목별 감면내역

####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 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 마. 취득세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 3. 기타

-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붙임3**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 알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561호, 2022.11.7.]**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 알림

1. 지방세정책과-4442(2022.11.1.)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부는 이태원 사고('22.10.29.)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방세정 지원방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즉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조치 안내(자치단체 대상)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정과장),세우과장,38세금징수과장,부산광역시(세정정책담당관),세정운영담당관,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지방세정책담당관),남세정정책담당관,광주광역시(세정과장),대전광역시(세정과장),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세정과장),세원관리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담당관),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이수호 서기관 홍자은 지방세정책과 전결 2022. 11. 7.  
장 이현정

합조자

시행 지방세정책과-4561 (2022. 11. 7.) 접수 세정과-21446 (2022. 11. 7.)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814 팩스번호 044-204-8968 / suholee@korea.kr / 비공개

#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조치 안내

◆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등에 대한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지방세정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1 지원대상

○ **(대상범위)** 현재 복지부 및 중대본을 통해 집계되어 자치단체로 통보되는 사망자 및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 부모·배우자 및 자녀, 그 외 사실상 보호자(세월호 사고, 이태원 사고 감면기준 동일)

○ **(유가족)**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지방세정 지원조치 실시

○ **(부상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상자 및 가족의 신청을 받아 기한연장 등 필요한 지방세정 지원 조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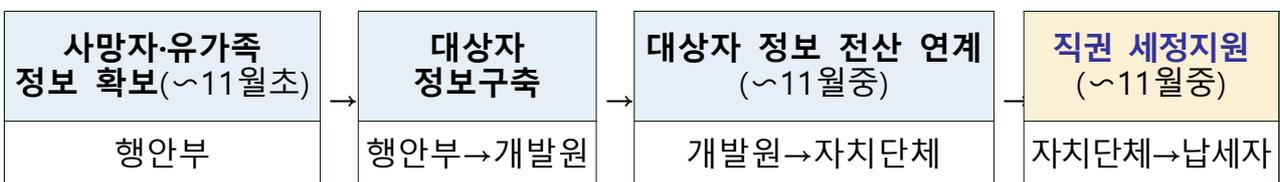
- 부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고, 세부담 경감이 아닌 세정운영 조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근거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 근거규정 :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25 등), 체납 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세무조사 유예(「지방세기본법」 §83)

## 2 조치사항

○ **(유가족)** 각 자치단체로 통보된 사망자 및 유가족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직권으로 세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유가족 정보연계 완료시 추후 재안내할 예정(11월 중순)



○ **(부상자)** 자치단체장이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시, 납세자보호관 및 세정부서가 협업하여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내용·절차를 안내\*

\* 현재 중대본을 통해 부상자 주소지 자치단체로 부상자 정보 제공중

※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지원방안 안내」  
(지방세정책과-4442호, '22.11.1.)시 旣 통보내용

### ① 지방세 감면

- (자치단체 감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지방세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대상 지자체) 사망자 가족이 거주하거나, 그 가족의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관할하는 지자체

### ② 지방세 부담 완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기한연장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

- (징수유예)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지방세징수법」 제25조 등)

\* 징수유예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

### ③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세무조사 유예) 사고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납세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직권 등으로 세무조사 연기 가능(「지방세기본법」 제83조)

### ④ 지방세외수입 부담 완화

- 세외수입 성격별로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지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처분 유예), 과태료·그 외 부과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